

의안번호	2207321
의 퇴 인	김원이 의원
회 답 일	2025. 2. 17.
추계번호	25B0100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1인을 증원할 경우, 상임위원의 임명 형태에 따라 ①상임위원 2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500만원(연평균 3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②상임위원 2인을 신규로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0억 3,600만원(연평균 4억 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4조 및 안 제6조)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3	3	3	3	3	15	3
인건비성 경비	3	3	3	3	3	15	3
시나리오2	408	395	403	411	419	2,036	408
인건비성 경비	370	377	384	392	400	1,923	385
임차료 및 관리비	18	18	19	19	19	93	19
시설공사비	10	—	—	—	—	10	2
자산취득비	10	—	—	—	—	10	2

주: 1. 시나리오1은 상임위원 2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이고, 시나리오 2는 상임위원 2인을 신규로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임

2. 향후 실제 상임위원의 임명 형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변동 및 사무공간 마련 상황 등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3.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4.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의무규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 현행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함(제2항) ※ 현행 상임위원은 2인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임(항공정책실장 및 철도국장)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되, 비상임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 또는 피해자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함(제3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겸직하는 상임위원 2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위원 1인을 증원하는 경우 인건비 및 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위원회 소속	○ 국토교통부 소속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구성	○ 위원장(비상임) 1인 ○ 상임위원(국토교통부 실·국장급 공무원 겸직) 2인 ○ 비상임위원 9인	○ 위원장(비상임) 1인 ○ 상임위원(정무직 공무원) 2인 ○ 비상임위원 10인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상임위원 2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와 신규로 차관급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인건비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 업무지침」을 적용하고, 조직변동에 따른 비서진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등을 적용함¹⁾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 10.)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	1.9	1.9	1.9	1.9	1.9
공무원 신규 채용 기관부담 요율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13.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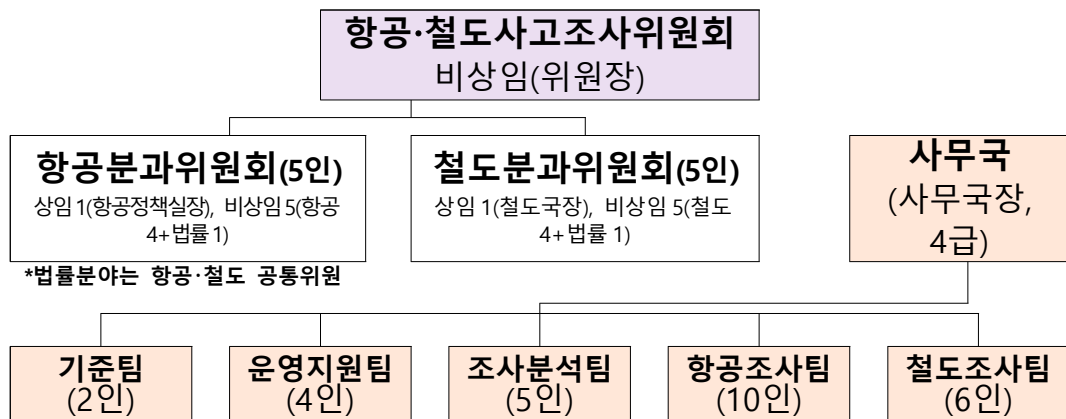
(단위: %)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상임위원(2인) 직급 조정 및 비상임위원 1인 증원(안 제4조 및 안 제6조)
 -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비상임), 상임위원 2인(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및 철도국장), 비상임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²⁾ 현행법 제16조³⁾에 따라 사무국을 두고 있음

[표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구성현황



주: 사무국 현원기준(공무직 3인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 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직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
- 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사고조사관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하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상임위원 2인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와 ②신규로 차관급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각각 추계함

1. 상임위원 2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 가. 인건비성 경비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원회 개최 시 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만 지급하며, 상임위원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고위공무원) 및 철도국장(고위공무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
 - * 안전검토수당(1건 20만원, 2건이상 40만원) + 참석수당(15만원 + 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
-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2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겸직하도록 할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는 소속 부처에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비상임위원 1인 증원에 따른 안전검토수당 및 참석수당의 증액 소요는 2024년 비상임위원 1인당 집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500만원(연평균 300만원)으로 추계
 - 2024년 안전검토수당 및 참석수당 집행액(2,530만원) ÷ 비상임위원 10인(위원장 포함) = 253만원/인

[표 3] 인건비성 경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3	3	3	3	3	15	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 사무국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고, 위원장 포함 위원(비상임)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무실에서 근무중임

* 세종시 가름로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층, 전용면적 533㎡('24년 임차료 104,400천원)

- 위원회 사무국과 별도로 시험분석센터 및 잔해보관시설은 김포공항 내 국립항공박물관 맞은편, 서향청 토지 및 건물에 위치
-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2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겸직하도록 할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원 2인을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실 임차 및 관리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상임위원 2인을 신규로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가. 인건비성 경비

- 차관급 상임위원 2인 임명 및 비상임위원 1인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9억 2,300만원(연평균 3억 8,500만원)으로 추계
 - 차관급 상임위원 2인 임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는 「2025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차관급 “연봉+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고, 기관부담금(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관부담요율 적용)을 더한 금액으로 함
 - 비상임위원 1인 증원에 따른 안전검토수당 및 참석수당의 증액 소요는 2024년 비상임위원 1인당 집행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으로 추계
 - 2024년 안전검토수당 및 참석수당 집행액(2,530만원) ÷ 비상임위원 10인(위원장 포함) = 253만원/인

[표 4]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상임위원(차관급) 2인 임명	367	374	381	389	397	1,908	382
비상임위원 1인 증원	3	3	3	3	3	15	3
합계	370	377	384	392	400	1,923	3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는 사무실 증가면적에 현 청사의 2024년 기준 임차료 및 관리비 단가를 적용
 - 임차료 단가: 91,563원/㎡ (104,400천원 ÷ 1,140.20㎡(총면적))
 - 관리비 단가: 38,941원/㎡ (370만원/월 × 12월 ÷ 1,140.20㎡(총면적))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차관급 위원 사무실 배정 면적인 66㎡를 적용
- 사무실 증가면적 132㎡(2인)에 임차료 및 관리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
 - 이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차관급 상임위원 2인 임명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9,200만원(연평균 1,800만원)으로 추계
 - $132\text{㎡} \times (91,563\text{원}/\text{㎡} + 38,941\text{원}/\text{㎡}) = 1,723\text{만원}$

[표 5]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차료 및 관리비	18	18	19	19	19	93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시설공사비

- 차관급 상임위원 2인의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칸막이 공사 등 시설공사비로 1,000만원 소요 가정
 - 현재 위원회 사무국이 입주한 건물의 전기 배선 등의 추가 공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칸막이 공사 등의 비용으로 1천만원 반영
 - 시설공사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차관급 상임위원 2인 임명에 따른 시설공사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0만원(연평균 200만원)으로 추계

[표 6] 시설공사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시설공사비	10	-	-	-	-	10	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자산취득비

- 차관급 상임위원 2인의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원 소요 가정
 - 2020년 기준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1인당 5,010천원 적용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발생
- 차관급 상임위원 2인 임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0만원(연평균 200만원)으로 추계

[표 7]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자산취득비	10	-	-	-	-	10	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2인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1인을 증원할 경우, ①상임위원 2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500만원(연평균 3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②상임위원 2인을 신규로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0억 3,600만원(연평균 4억 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상임위원 2인 신규 임명 및 비상임위원 1인 증원 관련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3	3	3	3	3	15	3
인건비성 경비	3	3	3	3	3	15	3
시나리오2	408	395	403	411	419	2,036	408
인건비성 경비	370	377	384	392	400	1,923	385
임차료 및 관리비	18	18	19	19	19	93	19
시설공사비	10	—	—	—	—	10	2
자산취득비	10	—	—	—	—	10	2

주: 1. 시나리오1은 상임위원 2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이고, 시나리오 2는 상임위원 2인을 신규로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임
 2. 향후 실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변동 및 사무공간 마련 상황 등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3.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4.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2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와 신규로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상임위원의 임명 형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변동 및 사무공간 마련 상황 등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